
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30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30.

발 의 자 : 김태선 · 박 정 · 허종식
박해철 · 박민규 · 김우영
장철민 · 허 영 · 한민수
김주영 · 김교홍 · 김영환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의2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연재난에 대하여 기상청장이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예보 · 경보 · 통지하는 호우 및 태풍의 기준이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대한 소관이 불분명하고 실제 업무 집행에 행정상 비효율성이 발생함.

이에 「기상법」에서 직접 예보 · 경보 · 통지의 기준을 규정하고 기상청장의 문자 발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15조의 2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030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기상재난에 관한 예보·경보·통지)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강도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 등 기상현상에 대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재난 예보·경보·통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u>제15조의2(기상재난에 관한 예보·경보·통지)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강도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 등 기상현상에 대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재난 예보·경보·통지를 실시하여야 한다.</u>